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으로, 군사법원 항소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고, 각 군 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 5개 지역군사법원으로 통합 운영하며, 관할관 및 심판관제도를 폐지하는 등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서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전시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에 따른 사항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중요사건 심판관할 명시(안 제1조의2)

○ 군사법원법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중요사건의 심판 관할을 현행 ‘국방부 및 각군본부 보통군사법원과 보통검찰부’에서 ‘중앙지역군사법원 및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로 변경함

나. 국방부장관의 기소결정에 대한 취소신청 기간의 기산점 명시
(안 제1조의3)

- 군사법원법 제2조제5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기소결정에 관한 취소신청기간의 기산점을 명시함

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관할 조정 권한 부여(안 제2조, 제4조 및 제5조)

- 관련사건의 병합심리 여부 결정, 관할이 경합하는 사건에 대한 관할 지정 또는 관할이전이나 지정이 필요한 각 신청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을 현행 ‘직근상급부대의 군사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에서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수정함

라. 항소사건의 병합심리절차 규정(안 제4조의2)

-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에 대한 항소사건과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에 대한 항소사건이 관련항소사건인 경우 사건의 통일적 해결을 위해 고등법원이 병합심리할 수 있음을 규정
- 병합심리하는 경우 공소유지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의 항소사건에 관하여는 군검사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의 항소사건에 관하여는 검사가 담당하도록 하되, 상호 협력하도록 함

마. 군사법원의 직권이송 규정 추가(안 제8조)

-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사법원으로 사건을 직권이송 할 경우 소송기록 등을 송부하고 해당 군검찰부로 그 사실을 통지

하도록 함

바. 국선변호인 명부 관리 근거 신설(안 제20조 신설)

- 군사법원에서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를 작성 및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 지방변호사회와 협조할 수 있도록 함

사. 속기록에 대한 재판기록 인정 근거 정비(안 제35조 각 호 및 제42조 삭제)

- 속기록 등을 조서로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속기 또는 녹취에 관한 군사법원법 제90조가 삭제된 것을 반영하여 제42조를 삭제함

아. 기록 송부전 피고인의 구속 등 관련 사건 처리 근거 정비(안 제61조)

- 상소된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구속 등(구속기간갱신, 구속취소, 보석, 구속집행정지 등)에 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고등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군사법원에서 하도록 하고, 이송 또는 환송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구속 등에 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도달하기까지는 이송 또는 환송하는 군사법원이나 상소법원에서 하도록 함

자. 재정신청사건의 소관 법원 변경(안 제122조부터 125조의5까지)

- 군검찰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의 소관 법원이 ‘고등군사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재정신청 및 그 취소의 방식과 통지절차 규정에서 소관 법원을 수정함

차. 군사법원의 관공서에 대한 보관서류 송부요구 등 조회 대상 기

관의 예시로 경찰청을 추가함(안 제133조의2)

카. 보호관찰 처분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4까지 삭제)

- 군사법원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절차규정은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현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삭제함

타. 항소사건 피고인 국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규정 신설(안 제151조의2 신설)

- 항소사건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항소심 기록을 송부받은 고등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명시함

파. 항소심 진행 중 피고인이 군인신분을 상실하더라도 고등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155조의2 신설)

하. 재소자의 재심 청구와 취하 절차에 관한 준용규정 신설(안 제163조의2)

- 재소자의 재심청구와 취하 절차에 관하여 재소자의 상소에 관한 규칙 제149조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함

거. 전시 군사법원 운영을 위한 소송절차 규정 신설(제9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삭제 및 안 제168조부터 제174조까지 신설)

- 심판관제도, 고등군사법원 구성, 재판관 지정제도, 재판관의 계급 및 관할관의 확인조치제도 등은 평시 군사법원 소송절차에서 삭

제하고, 전시 군사법원 소송절차에 관한 특례 규정으로 신설함
너. 기타 적용법조문 정정, 법령 제명 및 조문 표기법 통일, 띄어쓰기
등 수정함

3.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법 제11조제2항”을 “법 제12조의4제4항”으로, “국방부 또는 각군본부의 보통군사법원”을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제36조제5항”을 “제36조제7항”으로, “국방부 또는 각군본부”를 “국방부검찰단”으로 한다.

제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3(취소 신청기간의 기산점) 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신청기간은 국방부장관이 법 제2조제4항 본문에 따라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한 후 그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이 통보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2조제1항 중 “공통되는 직근상급부대의 군사법원 또는 공통되는 군사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고등군사법원”을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제2항 중 “제1항”을 “군검사”로, “부분을”을 “부분을, 피고인의 신청서에는 부분 1통을 각”으로 한다.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체 없이 각 사건계속

군사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제2항의 신청서 부분을 신청인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사건계속 군사법원과 신청인의 상대방은 제3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중 “신청을 받은 군사법원”을 “신청을 받은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군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을 “신청인과 그 상대방”으로, 제2항 중 “군사법원이외의”를 “군사법원 이외의”로, “7일 이내”를 “7일 이내”로 한다.

제4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신청 및 심리에 대한 절차는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항소사건의 병합심리) ①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이 관련사건에 해당하고 그 각 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지방법원본원합의부의 재판장은 그 부에서 심리 중인 항소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고등법원에 계속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고등법원의 재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등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합심리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등본을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송부하여야 하고, 지방법원본

원합의부는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병합하여 심리하는 경우 공소유지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의 항소사건에 관하여는 군검사가, 그렇지 않은 항소사건에 관하여는 검사가 담당한다. 이 경우 군검사와 검사는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제목 “(관할이전의 신청등)”을 “(관할이전 또는 지정의 신청등)”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제19조”를 “제19조제1항, 제2항 및 제19조의2”로, “이전”을 각각 “이전 또는 지정”으로, “신청사유”를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사유”로, “직근상급부대의 군사법원 또는 상급부대가 없는 경우에는 고등군사법원”을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제3항 중 “군사법원은 지체없이”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체 없이”로, 제4항 중 “3일 이내”를 “3일 이내”로, “제3항의 군사법원”을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한다.

제6조 제목 “(관할이전의 결정에 의한 처리절차)”을 “(관할이전 또는 지정의 결정에 의한 처리절차)”로, 같은 조 제1항 중 “관할이전”을 “관할이전 또는 지정”으로, “결정을 한 군사법원”을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그사건”을 “그 사건”으로, 제2항 중 “관할이전”을 “관할이전 또는 지정”으로, “결정을 한 군사법원”을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제3항 중 “지체 없이”는 “지체 없이”로, “이전”은 “이전 또는 지정”으로 한다.

제7조 중 “병합심리신청 또는 관할이전신청”을 “병합심리신청, 관할이

전 또는 관할지정신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3조제2항 또는 제6조제3항”을 “제3조제2항, 제6조제3항 또는 법 제14조의2”로 한다.

제3장 제목 “군사법원의 심판기관 및 직원”을 “군사법원의 직원”으로 한다.

제9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아닌자”를 “아닌 자”로, 제2항 중 “될자”를 “될 자”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피의자 마다”를 “피의자마다”로 한다.

제19조 제목 “(선정을 위한 고지)”를 “(국선변호인의 선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소제기 전에는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및 피의자의 연락처 등을, 공소제기 후에는 공소장 부분 및 피고인의 연락처 등을 함께 고지할 수 있다.

제19조제3항 중 “서면”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제기 전에는 서면”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의 작성) ① 각 지역군사법원은 국선변호를 담당할 것으로 예정한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 등을 일괄 등재한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선변호 업무의 내용 및 국선변호 예정일자를 미리 지

정할 수 있다.

② 군사법원장은 제1항의 명부 작성에 관하여 관할구역 또는 인접한 지역군사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지방변호사회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명부가 작성된 경우 군사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부의 기재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이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같은 조 제3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정해진 자중”을 “정해진 자 중”으로, 제2항 중 “제1항의 경우”를 “제1항의 경우”로, 제3항 중 “발생한때”를 “발생한 때”로 한다.

제23조 각 호 이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같은 조 제4호 중 “있을때”를 “있을 때”로 한다.

제24조 중 “게을리 하여”를 “게을리하여”로, “법무실장 또는 소속부대장”을 “법무실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제66조제2항에 따른”을 “제66조제3항에 따라 심급별로 하는”으로, “첨부하여 심급마다 이를 하여야”를 “첨부하여야”로, 제2항 중 “공소제기전의 보조인신고”를 “공소제기 전에 한 보조인의 신고”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을 조사하는 때”를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위하여”로, “이 규칙의”를 “이 규칙이”로, 제2항 중 “할 수있다”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상소권자등”을 “상소권자 등”으로 한다.

제32조의2 중 “제87조의2 제3항”을 “제87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32조의3 중 “제88조의2 제2항”을 “제88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제87조의3 제3항”을 각각 “제87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42조 및 제4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6조제1항 중 “미달할 지라도”를 “미달할지라도”로 한다.

제48조 중 “피고인의 생년월일과 법 제110조제1항 각호”를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제1항의경우”를 “제1항의 경우”로 한다.

제54조 중 “법 제128조”를 “법 제112조 및 법 제128조”로, “작성하게”를 “작성하게 하거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확인서 기타 서면을 작성하게”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이외의 부분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59조 중 “각호중”을 “각 호 중의”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 중 “제139조 제3호”를 “제139조제3호”로, 같은 조 제2항 중 “제139조 제6호”를 “제139조제6호”로 한다.

제59조의4제5항 중 “제142조 제3항·제4항”을 “제142조제3항·제4항”으로, “제27조제1항”을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상소중”을 “상소기간중 또는 상소중”으로, “고등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을 “상소법원”으로, “원심군사법원”을 “원심군사법원(상고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말한다)”으로, 제2항 중 “군사법원”을 “관할 군사법원 또는 관할 법원”으로, “대법원”을 “상소법원”으로 한다.

제70조 중 “아닌자”를 “아닌 자”로 한다.

제73조의4제5항 중 “제27조 제1항”을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75조 중 “24시간이전”을 “24시간 이전”으로 한다.

제76조 중 “선서전”을 “선서 전”으로, “설명하여야한다”를 “설명하여야한다”로 한다.

제78조제2항 각 호 이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79조제2항 각 호 이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82조 제목 “(재 주신문)”을 “(재주신문)”으로, 같은 조 제1항, 제2항, 제3항 중 “재 주신문”을 각각 “재주신문”으로 한다.

제88조제2항 중 “제87조제2항”을 “제86조제2항 및 제87조제2항”으로 한다.

제88조의3제2항, 제3항 중 “제204조의2 제1항”을 각각 “제2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88조의4제1항 중 “제206조의2 제1호”를 “제206조의2제1호”로, “신문여부”를 “신문 여부”로 한다.

제11절 제목 “감정”을 “감정 등”으로 한다.

제89조제2항 중 “변경등”을 “변경 등”으로 한다.

제90조 제목 중 “(간수의 신청방법)”을 “(감시의 신청방법)”으로,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간수”를 “감시”로 한다.

제93조의3제1항 중 “제221조의2 제2항”을 “제221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94조 중 “감정”을 “감정, 통역과 번역”으로 한다.

제95조제1항 각 호 이외의 부분 중 “다음지역”을 “다음 지역”으로, “보통 군사법원”을 “군사법원”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보통군사법원”을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96조제1항 각 호 이외의 부분 중 “다음사항”을 “다음 사항”으로 한다.

제99조제7호 중 “제232조의2 제1항”을 “제232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99조의2제1호 중 “제99조 제1호”를 “제99조제1호”로 한다.

제100조제2항 각 호 이외의 부분 중 “법제238조 제2항”을 “법 제238조제2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같은 조 제3항 중 “제252조 제1항”을 “제252조제1항”으로 한다.

제100조의5 제목 “(영장전담군판 사의 지정)”을 “(영장전담군판사의 지정)”으로,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참모총장”을 “군사법원장”으로 한다.

제100조의19제1항 각 호 이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각호”를 “각 호”로, “제1항 제2호”를 “제1항제2호”로,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제1호”를 “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1조제2항 중 “기간 및 법 제2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여부를”을 “기간을”로 한다.

제102조 중 “법 제239조 또는 법 제240조”를 “법 제240조”로 한다.

제103조제1항 중 “제232조의2 제4항”을 “제232조의2제4항”으로, 제2항 중 “제245조 제1항”을 “제245조제1항”으로 한다.

제104조제1항 중 “제52조 제1항”을 “제52조제1항”으로, “제232조의2 제1항”을 “제232조의2제1항”으로, 제2항 중 “제232조의4 제2항”을 “제232조의4제2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00조의3의 규정은 구속영장의 인치·구금할 장소의 변경 청구에 준용한다.

제105조 제목 “(체포·구속적부심사청 구권자의 체포, 구속영장등본 교부청구)”를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자의 체포, 구속영장등본 교부청구)”로 한다.

제106조 제목 “(체포·구속적부심사청 구서의 기재사항)”을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으로 한다.

제107조제1항 중 “심문도중”을 “심문 도중”으로 한다.

제108조 중 “24시간이내”를 “24시간 이내”로 한다.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압수·수색하고자 할 경우 그 작성기간

제110조제2항 중 “각호의 사항외”를 “각 호의 사항 외”로 한다.

제114조 각 호 이외의 부분 중 “제261조 제3항”을 “제261조제3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16조 각 호 이외의 부분 중 “제262조 제1항”을 “제262조제1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17조 각 호 이외의 부분 중 “사항외”를 “사항 외”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67조 내지 제2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소할 때에는 고소인과 피해자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0조제1항 각 호 이외의 부분 중 “사항외”를 “사항 외”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21조제1항 중 “구속되어 있는 경우”를 “구속되어 있거나, 체포 또는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 체포영장, 긴급체포서,”로 한다.

제122조 중 “증거등”을 “증거 등”으로 한다.

제123조 중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124조제1항 중 “고등군사법원”을 각각 “고등법원”으로, “소속부대”를 “소속 보통경찰부”로, 제2항 중 “고등군사법원의 서기는”을 “고등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으로,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참모총장”을 “고등경찰부의 장”으로 한다.

제124조의2 중 “제304조제2항 제2호”를 “제304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125조의2제3호 중 “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125조의4제1항제3호 중 “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제1항 제2호”를 각각 “제1항제2호”로 한다.

제125조의5제1항 각 호 이외의 부분 중 “재정신청사건의 관할 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군사법원”을 각각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126조의2 각 호 이외의 부분 중 “제309조의3 제1항”을 “제309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126조의3 중 “영상녹화물에 대한”을 “영상녹화물에 대한”으로 한다.

제126조의4제1항 각 호 이외의 부분 중 “제309조의4 제1항”을 “제309조의4제1항”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 제1호·제3호”를 “제2항제1호·제3호”로, “제309조의11 제3항”을 “제309조의11제3항”으로 한다.

제126조의5제2항 중 “제309조의4 제2항”을 “제309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126조의9제2항 중 “제309조의6 제2항”을 “제309조의6제2항”으로 한다.

제127조의2 중 “제310조의2 제3항”을 “제310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129조 중 “제325조 단서”를 “제325조”로 한다.

제129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제326조의2 제1항”을 각각 “제326조의2 제1항”으로 한다.

제129조의3제1항 중 “제325조 제3호”를 “제325조제3호”로 한다.

제131조 제목 “(피해자의 진술권)”을 “(피해자등의 진술권)”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제3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제338조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등(이하 이 조부터 제131조의4까지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진술에 관한 신청”으로 한다.

제131조의2제1항 중 “법 제338조 제1항에 정한 피해자등(이하 이 조 및 제131조의3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를 “피해자등”으로 한다.

제133조의2제1항 중 “법원,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군사법원, 군검찰부”를 “군사법원, 군검찰단, 법원,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으로 한다.

제134조의2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의 영상녹화물의 재생 화면에는 녹화 당시의 날짜와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제134조의3제3항 중 “제134조의2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 제5호, 제6호, 제4항, 제5항”을 “제134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제5호·제6호,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134조의5제2항 중 “제134조의2 제3항”을 “제134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134조의6제1항 중 “제347조 제4항”을 “제347조제4항”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제347조 제1항”을 “제347조제1항”으로 한다.

제136조 중 “제350조제3항의규정”을 “제350조제3항의 규정”으로 한다.

제139조제2항 중 “재판관”을 “합의부원”으로 한다.

제141조제2항 중 “제347조 ,”를 “제347조,”로 한다.

제144조의2, 제144조의3, 제144조의4 및 제14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6조의3제1항 중 “제64조 제2항”을 “제64조제2항”으로, “군사법원”을 “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으로, 제2항 중 “군사법원”을 “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으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147조 중 “군사법원”을 “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147조의2 중 “제61조 제2항”을 “제61조제2항”으로 한다.

제149조제1항 중 “원심법원”을 “원심법원(상고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50조제1항 중 “취하당시”를 “취하 당시”로, 제1항 및 제2항 중 “군사법원”을 각각 “원심군사법원 또는 상소법원”으로 한다.

제1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1조의2(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소송기록접수통지) ① 기록의 송부를 받은 고등법원은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52조의2제1항 중 “항고이유”를 “항소이유”로 한다.

제152조의3 중 “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152조의4제2항 각 호 이외의 부분 중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153조 각 호 이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같은 조 제1호 중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7일이내”를 “7일 이내”로, 제2호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155조 중 “제2장중”을 “제2편 제2장 중”으로,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1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5조의2(신분상실과 재판권) 항소심 진행 중에 피고인이 법 제2조 제1항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고등법원이 계속하여 해당 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제157조제2항 중 “14일이내”를 “14일 이내”로 한다.

제158조 중 “3인이상”을 “3인 이상”으로 한다.

제161조 제목 중 “(항고군사법원의 결정등본의 송부)”를 “(항고법원의 결정등본의 송부)로,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항고군사법원”을 “항고법원”으로 한다.

제162조의2 및 제1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162조의2(신분상실과 재심관할) 군사법원이 한 원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이 법 제2조제1항의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그 원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같은 심급의 법원이 관할한다.

제163조의2(준용규정) 제149조의 규정은 재심의 청구와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제164조 중 “관할군사법원”을 “관할군사법원 또는 상소법원”으로, “재심

군사법원”을 “재심법원”으로, “군검찰부”를 “군검찰부 또는 대검찰청”으로 한다.

제165조제1항 중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제1심군사법원”을 “제1심 군사법원”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제1심 또는 제2심의 군사법원”을 “제1심의 군사법원 또는 제2심의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165조의3 중 “14일내”를 “14일 이내”로 한다.

제165조의4제2항 중 “피고인수”를 “피고인의 수”로 한다.

제165조의6 각 호 이외의 부분 중 “제501조의21 제1항”을 “제501조의21 제1항”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같은 조 제1호 중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2항”을 “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2항”으로, 제2호 중 “제118조”를 “제164조제1항”으로, “범칙금을 납부기간내에”를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으로, 제3호 중 “경범죄처벌법 제5조”를 “경범죄 처벌법 제6조”로, “제117조”를 “제162조”로 한다.

제165조의7 제목 “(불출석심판청 구의 방식등)”를 “(불출석심판청구의 방식등)”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제501조의21 제1항”을 “제501조의21 제1항”으로, “관할군사경찰부대”를 “관할 군사경찰부대”로, “제118조”를 “제163조”로, “경범죄처벌법”을 “경범죄 처벌법”으로, 제3항 중 “군사경찰과의 군사법경찰관”을 “군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5편을 제6편으로 하고, 제5편에 제168조부터 제174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5편 전시·사변 시의 특례

제168조(중요사건의 심판) 법 제534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의 보통군사법원이 심판할 수 있는 그 밖의 중요사건이라 함은 법 제36조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중요사건을 말한다.

제169조(심판관의 임명) 법 제534조의4에 따른 관할관은 전시 군사법원이 재판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 제534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심판관을 미리 임명하여야 한다.

제170조(전시 고등군사법원의 구성) 법 제534조의12제3항 단서에 의하여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군판사 3인 외에 심판관 2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171조(재판관의 지정) ① 관할관은 전시 군사법원에 계속되는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 제534조의11에 따라 재판관을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고등군사법원 관할관이 재판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주심을 행하도록 군판사의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172조(재판관의 계급) ① 피고인이 장교 또는 동등이상의 군무원, 군적을 가진 사관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군소속기관의 학생, 생도와 사관 후보생, 민간인, 외국인일 경우에는 그 전시 군사법원의 재판장은 영관급이상의 장교이어야 한다.

② 고등군사법원의 재판관은 영관급이상의 장교이어야 한다.

③ 법 제534조의14의 규정은 소집중에 있는 예비역군인에 대하여도 그 계급에 따라 준용한다.

제173조(관할관의 확인조치) ① 법 제534조의7제1항에 따른 판결의 확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판결확인서로 한다.

② 법 제534조의7제2항에 따라 선고된 판결대로 확인한 것으로 보게된 경우 전시 군사법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관할관 확인기간 도과서를 작성하여 소송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74조(준용규정) 이 편에서는 이 규칙 중 “고등법원”은 “고등군사법원”으로, “군사법원”은 “보통군사법원”으로, “상소법원”은 “고등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으로, “항고법원”은 “항고군사법원”으로 간주한다.

제168조, 제169조, 제169조의2, 제170조까지를 각각 제175조, 제176조, 제176조의2, 제177조까지로 하고, 제176조(종전 제169조) 중 “대법원”을 “상소법원”으로 하고, 제177조(종전 제170조) 중 “공판정에서의좌석에 관한규칙”을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헌병부대”를 “군사경찰부대”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제379조”를 “534조의7”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중 “제379조 제2항”을 “제534조의7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의2(중요사건의 심판) <u>법 제 11조제2항</u>의 규정에 의하여 <u>국방부 또는 각군본부의 보통군사법원</u>이 심판할 수 있는 <u>기타 중요사건</u>이라 함은 <u>법 제36조제5항</u>의 규정에 의하여 <u>국방부 또는 각군본부의 보통검찰부</u>가 관할한 사건을 말한다.</p> <p><신 설></p> <p>제2조(관련사건의 병합심리신청)</p> <p>① <u>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공통되는 직근상급부대의 군사법원 또는 공통되는 군사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고등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u></p> <p>② <u>제1항의 신청서에는 피고인</u></p>	<p>제1조의2(중요사건의 심판) ---제 12조의4제4항-----<u>중앙 지역군사법원</u>----- <u>그 밖의</u> ----- <u>제36조제7항</u>----- <u>국방부검찰단</u>-----</p> <p>제1조의3(취소 신청기간의 기산점) <u>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신청기간은 국방부장관이 법 제2조제4항 본문에 따라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한 후 그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이 통보된 날부터 기산한다.</u></p> <p>제2조(관련사건의 병합심리신청)</p> <p>① ----- ----- <u>중앙지역군사법원</u>-----</p> <p>② <u>군검사</u>-----</p>

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의하여 병합 심리하게 된 군사법원이외의 군사법원은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병합심리하게 된 군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관할의 경합) ① (생략)

② 법 제1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사건명, 피고인의 인적사항, 기소된 군사법원, 그 순위 및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의한다. <후단 신설>

<신설>

-----.

② -----
----- 군사법원 이외의 -----

----- 7일 이내 -----

--.

제4조(관할의 경합)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이 경우 신청 및 심리에 대한 절차는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제4조의2(항소사건의 병합심리)

①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이 관련 사건에 해당하고 그 각 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수개의 관련 항소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지방법원본원합의부의 재판장은 그 부에서 심리 중인 항소 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고등법원에 계속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고등법원의 재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등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합심리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등본을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송부하여야 하고, 지방법원본원합의부는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병합하여 심리하는 경우 공소유지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의 항소 사건에 관하여는 군검사가, 그렇지 않은 항소사건에 관하여는 검사가 담당한다. 이 경우 군검사와 검사는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할이전의 신청등) ① 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의 이전을 신청함에는 사건명, 관할을 이전하고자 하는 군사법원,

제5조(관할이전 또는 지정의 신청등) ① -- 제19조제1항, 제2항 및 제19조의2-----
---이전 또는 지정-----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및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직근상급부대의 군사법원 또는 상급부대가 없는 경우에는 고등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사법원은 지체없이 군검사의 신청서부분을 피고인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신청서부분은 군검사에게 송달함과 함께 공소를 접수한 군사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검사, 피고인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제3항의 신청서부분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3항의 군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관할이전의 결정에 의한 처리절차) ① 공소제기전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 결정을 한 군사법원은 결정등본을 군검사와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군검사가 그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

-----이전 또는 지정-----

----- 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신청사유-----

- 중앙지역군사법원-----.

② (현행과 같음)

③ -----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체 없이

-----.

④ -----

----- 3일 이

내----- 중앙지역군사법원

-----.

제6조(관할이전 또는 지정의 결정

에 의한 처리절차) ① -----

----- 관할이전 또

는 지정----- 중앙지역군

사법원-----

----- 그 사건

할 때에는 공소장에 그 결정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 결정을 한 군사법원은 결정등본을 군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 및 사건계속 군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사건계속 군사법원은 지체없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제2항의 결정등본과 함께 그 이전된 군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계속 군사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소송절차의 정지) 군사법원은 그 계속중인 사건에 관하여 병합심리신청 또는 관할이전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소송기록등의 송부방법) ① 제3조제2항 또는 제6조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소송기록과 증

-----.

② -----
- 관할이전 또는 지정-----
중앙지역군사법원-----

-----.

③ -----
--- 지체 없이 -----

- 이전 또는 지정-----

-----.

제7조(소송절차의 정지) -----

병합심리신청, 관할이전 또는 관할지정신청-----

-----.

제8조(소송기록등의 송부방법) ① 제3조제2항, 제6조제3항 또는 법
제14조의2-----

거물을 다른 군사법원으로 송부할 때에는 이를 송부받을 군사법원으로 직접 송부한다.

② (생략)

제3장 군사법원의 심판기관 및 직원
제9조(심판관의 임명) 관할관은

군사법원이 언제나 재판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심판관을 미리 임명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고등군사법원의 구성)

장관급장교에 대한 피고사건 기타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요 사건을 심판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군판사 3인 외에 심판관 2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12조(재판관의 지정) ① 관할관

은 군사법원에 계속되는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재판관을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고등군사법원관할관이 재판

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주심을 행하도록 군판사의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

② (현행과 같음)

제3장 군사법원의 직원
<삭 제>

<삭 제>

<삭 제>

제13조(재판관의 계급) ① 피고인

이 장교 또는 동등이상의 군무원, 군적을 가진 사관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군소속기관의 학생, 생도와 사관후보생, 민간인, 외국인일 경우에는 그 군사법원의 재판장은 영관급이상의 장교이어야 한다.

② 고등군사법원의 재판관은 영관급이상의 장교이어야 한다.

③ 법 제28조의 규정은 소집중에 있는 예비역군인에 대하여도 그 계급에 따라 준용한다.

제16조(특별변호인) ①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군사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변호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및 신청사유를 기재하고 변호인이 될자와 변호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자가 연명날인한다.

제18조(국선변호인의 수) ① 국선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마다 1인을 선정한다. 다만, 사건의

<삭 제>

제16조(특별변호인) ① -----
----- 아닌
자-----

-----.

② -----

----- 될자-----

-----.

제18조(국선변호인의 수) ① ----
----- 피의자
마다 -----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수인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9조(선정을 위한 고지) ① (생략)

② 제1항의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및 피의자의 연락처 등을 함께 고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고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생략)

제20조(선정방법) 군사법원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받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국선변호인의 선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 공소제기 전에는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및 피의자의 연락처 등을, 공소제기 후에는 공소장 부분 및 피고인의 연락처 등을 함께 고지할 수 있다.

③ -----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제기 전에는 서면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의 작성) ① 각 지역군사법원은 국선변호를 담당할 것으로 예정한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 등을 일괄 등재한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이하 '명부'라고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선변호 업무의 내용 및 국선변

제21조(선정취소)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② (생략)

③ 군사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해당하는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법정에서의 선정등) ① 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이미 선임된 변호인 또는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

호 예정일자를 미리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사법원장은 제1항의 명부 작성에 관하여 관할구역 또는 인접한 지역군사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지방변호사회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명부가 작성된 경우 군사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부의 기재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21조(선정취소) ① -----
--- 각 호의 어느 하나-----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지체 없이-----

제22조(법정에서의 선정등) ① --

거나 퇴정한 경우에 부득이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 법 제62조 제2항에 정해진 자중 재정중인 자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선정되었던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국선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기일 전날까지 군사법원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사임) 국선변호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기타 국선변호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제24조(감독) 군사법원은 국선변호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현저히 불성실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속지방변호사회장, 소속 군 본부 법무실장 또

----- 정해진
자 중 -----
-----.

② 제1항의 경우-----

-----.

③ -----

----- 발생한 때-----
-----.

제23조(사임) -----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3. (현행과 같음)
4. -----

----- 있을 때

제24조(감독) -----
----- 게을리하여 --

----- 법무실장 -----

는 소속부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보조인의 신고) ①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보조인의 신고는 보조인이 되고 자 하는 자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사이의 신분 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심급마다 이를 하여야 한다.

② 공소제기전의 보조인신고는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제27조(결정, 명령을 위한 사실조사) ① 결정 또는 명령을 함에 있어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 의하여 사실을 조사하는 때 필요한 경우에는 법 및 이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을 신문하거나 감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군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재판서의 등본, 초본 청구권자의 범위) ① 법 제79조에 규정된 기타의 소송관계인이라 함은 군검사, 변호인, 보조인, 법 제397조 및 제398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상소권자등을 말한다.

-----.

제26조(보조인의 신고) ① - 제66조제3항에 따라 심급별로 하는 -----

----- 첨부하여 -----.

② 공소제기 전에 한 보조인의 신고-----.

제27조(결정, 명령을 위한 사실조사) ① -----
-----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
----- 이 규칙이 -----
-----.

② -----

----- 할 수 있다.

제29조(재판서의 등본, 초본 청구권자의 범위) ① -----
-- 그 밖의 -----

----- 상소권자 등-----.

② (생략)

제32조의2(변경청구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의 처리)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법 제87조의2 제3항에 따른 변경청구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서기는 신청의 연월일 및 그 요지와 그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한 후 당해 공판조서 뒤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의3(공판조서의 낭독 등) 법 제88조의2 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낭독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서기가 낭독하거나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한다.

제35조(속기록등에 대한 조치) 속기를 하게 한 경우에 재판장은 서기로 하여금 속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게 할 수 있다.

1.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속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변경청구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의 처리) -----
----- 제87조의2제3항

-----.

제32조의3(공판조서의 낭독 등) -
- 제88조의2제2항-----

-----.

제35조(속기록등에 대한 조치) --

-----.

<삭 제>

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속기록
의 내용을 정리하여 통상의 방식
에 의한 조서를 작성하고 속기록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

3. 속기록의 작성없이 통상의 방
식에 의한 조서를 작성하고 속기
원본을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
서의 일부로 하는 일

제40조의2(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
상녹화물의 사본 교부) ① 재판
장은 법 제87조의3 제3항에도 불
구하고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소
송관계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
보호 또는 신변에 대한 위해 방
지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속기록, 녹음
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의 교
부를 불허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
할 수 있다.

② 법 제87조의3 제3항에 따라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
의 사본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사본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
송의 수행과 관계 없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의2(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
상녹화물의 사본 교부) ① ----

---- 제87조의3제3항-----

-----.

② -- 제87조의3제3항-----

-----.

제42조(속기, 녹취의 허가) 군검
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 제
9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
기 또는 녹취를 하고자 할 때에
는 미리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

<삭 제>

제44조(법 제98조에 의한 군사법
원 소재지의 범위) 법 제98조제1
항에 규정된 군사법원 소재지는
당해 군사법원이 위치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다만, 광역시
내의 군은 제외)으로 한다.

<삭 제>

제46조(법정기간의 연장) ① 소송
행위를 할 자가 국내에 있는 경
우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군사법원 또는 군검찰부 소재지
와의 거리에 따라 해로는 100킬
로미터, 육로는 200킬로미터마다
각 1일을 부가한다. 그 거리의
전부 또는 잔여가 기준에 미달할
지라도 50킬로미터 이상이면 1
일을 부가한다. (단서 생략)

제46조(법정기간의 연장) ① -----

----- 미달할

지라도 -----

----- (단서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제48조(구속영장의 기재사항) 구

제48조(구속영장의 기재사항) ---

속영장에는 법 제114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피고인의 생년월일과 법 제110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구속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3조(구속영장등본의 교부청구)

- ① (생략)
- ② 제1항의 경우에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구속과 공소사실등의 고지) 군사법원 또는 군판사는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할 때에는 서기를 참여시켜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57조(보석의 심리) ① 보석의 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은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4. (생략)
- ② ~ ⑦ (생략)

제59조(불허가 결정의 이유) 보석

----- 법 제110조제1항 각호-----

----- .

제53조(구속영장등본의 교부청구)

-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의 경우-----

----- .

제54조(구속과 공소사실등의 고지) ----- 법 제112조 및 법 제128조-----

- 작성하게 하거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확인서 기타 서면을 작성하게 -----.

제57조(보석의 심리) ① -----
----- 지체 없이 -----

----- .

- 1. ~ 4. (현행과 같음)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59조(불허가 결정의 이유) -----

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이유에 법 제135조 각호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9조의2(보석석방 후의 조치)

① 군사법원은 법 제139조 제3호의 보석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이행함에 있어 피고인이 소속된 부대의 장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피고인이 주거제한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등 보석조건을 준수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은 법 제139조 제6호의 보석조건을 정한 경우 출입국사무를 관리하는 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에 대한 출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생략)

제59조의4(보석조건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한 과태료 등) ① ~

④ (생략)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법

각 호 중의 -----
-----.

제59조의2(보석석방 후의 조치)

① ----- 제139조제3호-----

-----.

② ----- 제139조제6호-----

-----.

③ (현행과 같음)

제59조의4(보석조건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한 과태료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제142조 제3항·제4항에 따른 감치절차에 관하여는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61조(상소등과 구속에 관한 결정) ① 상소중의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구속, 구속기간갱신, 구속취소, 보석, 보석의 취소, 구속집행정지 및 그 정지의 취소의 결정은 소송기록이 고등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심군사법원이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이송,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의 사건에 관한 제1항의 결정은 소송기록이 이송 또는 환송 군사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이송 또는 환송한 군사법원이나 대법원이 이를 하여야 한다.

제70조(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 소환장의 기재사항) 피고인이

제142조제3항·제4항-----

-----, 제
26조제1항-----.

제61조(상소등과 구속에 관한 결정) ① 상소기간중 또는 상소중-----

----- 상소법원 -----
----- 원심군사법원(상고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말한다)-----.

② -----
----- 관할 군사법원 또는 관할 법원-----
----- 상소법원이 이를 하여야 한다.

제70조(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 소환장의 기재사항) -----

아닌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기 위한 소환장에는 그 성명 및 주거, 피고인의 성명, 죄명, 출석일시 및 장소와 신체검사를 하기 위하여 소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군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3조의4(증인에 대한 감치) ① ~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 및 법 제193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감치절차에 관하여는 「군사법원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 제1항(다만, 제25조제8항 중 “감치의 집행을 한 날”은 “법 제19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 고쳐 적용한다)을 준용한다.

제75조(소환의 유예기간) 증인에 대한 소환장은 늦어도 출석할 일시 24시간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아닌 자-----

제73조의4(증인에 대한 감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제26조 제1항-----

제75조(소환의 유예기간) -----

-- 24시간 이전-----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선서취지의 설명) 증인이 선서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때에는 선서전에 그 점에 대하여 신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서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78조(증인신문의 방법)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신문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제79조(주신문) ① (생략)

② 주신문에 있어서는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략)

③ (생략)

제82조(재주신문) ① 주신문을 한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반대신문이 끝난 후 반대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와 관련된 사항

-----.

제76조(선서취지의 설명) -----

선서 전-----

----- 설명하여야 한다.

제78조(증인신문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각 호의 어느 하나-----

1. ~ 4. (현행과 같음)

제79조(주신문) ① (현행과 같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82조(재주신문) ① -----

에 관하여 다시 신문(이하 “재주신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재주신문은 주신문의 예에 의한다.

③ 제80조제4항, 제5항의 규정은 재주신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8조(증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생략)

② 제87조제2항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8조의3(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생략)

② 법 제204조의2 제1항에 따른 동석신청에는 동석하고자 하는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동석이 필요한 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법 제204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가 부당하게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88조의4(비디오 등 증거장치 등에 의한 신문 여부의 결정) ①

재주신문-----.

② 재주신문-----
--.

③ -----
재주신문-----
--.

제88조(증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86조제2항 및 제87조제2항

-----.

제88조의3(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204조의2제1항-----

-----.

③ ----- 제204조의2제1항

-----.

제88조의4(비디오 등 증거장치 등에 의한 신문 여부의 결정) ① -

군사법원은 신문할 증인이 법 제 206조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증인으로 신문하는 결정을 할 때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또는 차폐시설을 통한 신문여부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증인의 연령, 증언할 당시의 정신적·심리적 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피고인이나 사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1절 감정

제89조(감정유치장의 기재사항 등) ① (생략)

② 감정유치기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유치할 장소의 변경 등은 결정으로 한다.

제90조(간수의 신청방법) 법 제2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간수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93조의3(감정서의 설명) ① 법 제22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

----- 제 206조의2제1호-----

--- 신문 여부-----

--. ② (현행과 같음)

제11절 감정 등

제89조(감정유치장의 기재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변경 등-----.

제90조(감시의 신청방법) ----- 감시-----.

제93조의3(감정서의 설명) ① - 제221조의2제2항-----

하여 감정서의 설명을 하게 할 때에는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94조(준용규정) 제10절의 규정은 구인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감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95조(증거보전처분을 하여야 할 군판사) ① 증거보전의 청구는 다음지역을 관할하는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감정의 청구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정함에 편리한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에게 할 수 있다.

제96조(청구의 방식) ① 증거보전 청구서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99조(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법 제232조의2 제1항에 규정

-----.

② (현행과 같음)

제94조(준용규정) -----

- 감정, 통역과 번역-----.

제95조(증거보전처분을 하여야 할 군판사) ① -----
다음 지역----- 군사법원
-----.

1. ~ 4. (현행과 같음)

② -----

-- 군사법원 -----

제96조(청구의 방식) ① -----
----- 다음 사항-----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9조(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
-----.

1. ~ 6. (현행과 같음)

7. - 제232조의2제1항-----

한 체포의 사유

8. ~ 9. (생략)

제99조의2(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 사항) 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99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사항

2. ~ 4. (생략)

제100조(자료의 제출등) ① (생략)

②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자 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제238조 제2항에 규정한 자료 외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③ 법 제252조 제1항에 규정한 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군판사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00조의5(영장전담군판사의 지정)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참모총장은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심사

8. ~ 9. (현행과 같음)

제99조의2(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 사항) -----

1. 제99조제1호-----

2. ~ 4. (현행과 같음)

제100조(자료의 제출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238조제2항-----

----- 각 호-----
-----.

1. ~ 2. (현행과 같음)

③ - 제252조제1항-----

-----.

④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5(영장전담군판사의 지정) 군사법원장-----

를 위한 전담군관사를 지정할 수 있다.

제100조의19(영장발부와 통지) ①
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1항 각호의 사유 및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

3. (생략)

③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1조(구속기간연장의 신청) ①
(생략)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수사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와 연장을 구하는 기간 및 법 제2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2조(구속기간연장기간의 계

-----.

제100조의19(영장발부와 통지)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4. (현행과 같음)

② ----- 각 호

-----.

1. (현행과 같음)

2. -----각 호----- 제1

항제2호 -----

3.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1호-----

-----.

제101조(구속기간연장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기간을 -----

--.

제102조(구속기간연장기간의 계

산) 구속기간연장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그 연장기간은 법 제239조 또는 법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구속기간만료 다음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03조(재체포·재구속영장의 청구) ① 재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재체포영장의 청구라는 취지와 법 제232조의2 제4항에 규정한 재체포의 이유 및 법 제253조에 규정한 재체포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재구속영장의 청구라는 취지와 법 제245조 제1항 또는 법 제253조에 규정한 재구속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04조(준용규정) ① 제48조, 제52조 제1항, 제53조의2의 규정은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피의자체포 또는 구속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체포영장에는 법 제232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체포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

산) -----
----- 법 제240

조-----

--.

제103조(재체포·재구속영장의 청구) ① -----

- 제232조의2제4항-----

--.

② -----

제245조제1항-----

-----.

③ (현행과 같음)

제104조(준용규정) ① -----, 제52조제1항-----

-. ----- 제232조의2제1항-----
-----.

② -----

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법 제232조의4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105조(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자의 체포, 구속영장등본 교부청구) (생략)

제106조(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생략)

제107조(심문기일의 절차) ① 법 제252조제9항에 따라 심문기일에 출석한 군검사, 변호인, 청구인은 군사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도중에도 군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108조(결정의 기한)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

----- 제232조의4제2항-----
-----.

③ 제100조의3의 규정은 구속영장의 인치·구금할 장소의 변경청구에 준용한다.

제105조(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자의 체포, 구속영장등본 교부청구) (현행과 같음)

제106조(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현행과 같음)

제107조(심문기일의 절차) ① -----

----- 심문 도중-----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8조(결정의 기한) -----

----- 24시-----

시간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110조(압수·수색·검증을 위한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위한 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6. (생략)

<신설>

② 신체검사를 내용으로 하는 검증을 위한 영장의 청구서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신체검사를 필요로 하는 이유와 신체검사를 받을 자의 성별 및 건강상태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14조(증인신문청구서의 기재사항) 법 제2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신문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7. (생략)

제116조(감정유치청구서의 기재사항) 법 제2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유치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간 이내-----.

제110조(압수·수색·검증을 위한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
----- 각호-----.

1. ~ 6. (현행과 같음)

7.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압수·수색하고자 할 경우 그 작성기간

② -----

-- 각호의 사항 외-----

제114조(증인신문청구서의 기재사항) -- 제261조제3항-----
----- 각호-----.

1. ~ 7. (현행과 같음)

제116조(감정유치청구서의 기재사항) -- 제262조제1항-----
----- 각호-----.

1. ~ 4. (생략)

제117조(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 청구서의 기재사항) 법 제26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허가 청구서에는 그 허가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하는 군검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제119조(고소인의 신분관계자료 제출) ① 법 제267조 내지 제2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소할 때에는 고소인과 피해자와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법 제2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소할 때에는 혼인의 해소 또는 이혼소송의 제기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20조(공소장의 기재요건) ① 공소장에는 법 제296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②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17조(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 청구서의 기재사항) -----

사항 외----- 각 호-----

-----.

1. ~ 2. (현행과 같음)

제119조(고소인의 신분관계자료 제출) ① 법 제267조 내지 제2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소할 때에는 고소인과 피해자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20조(공소장의 기재요건) ① -

- 사항 외----- 각 호-----
-----.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21조(공소장의 첨부서류) ①
공소장에는 공소제기전에 변호
인이 선임되거나 보조인의 신고
가 있는 경우 그 변호인선임서
또는 보조인 신고서를,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경
우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22조(재정신청서의 기재사항)
법 제30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
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과 증거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
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23조(재정신청 등의 수리통지)
고등군사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이외에
재정신청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
지하여야 한다.

제124조(재정신청의 취소방식 및
취소의 통지) ① 법 제302조제2
항에 규정된 취소는 고등군사법

제121조(공소장의 첨부서류) ① -

구속되어
있거나, 체포 또는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 체포영장, 긴급체포
서, -----
-----.

② (현행과 같음)

제122조(재정신청서의 기재사항)

증거 등 ---

-----.

제123조(재정신청 등의 수리통지)
고등법원-----

-----.

제124조(재정신청의 취소방식 및
취소의 통지) ① -----
----- 고등법원---

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이 고등군사법원에 송부되기 전에는 그 기록이 있는 군 검사 소속부대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취소서를 제출받은 고등군사법원의 서기는 즉시 법 제303조제2항에 규정된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참모총장 및 피의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4조의2(재정신청에 대한 결정과 이유의 기재) 법 제30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를 결정하는 때에는 죄명과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있도록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25조의2(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범위) 법 제306조의3제1항에 따른 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 2. (생략)
3. 그 밖에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군사법원이 지출한 송달료 등 절차진행에 필요한 비용

----- 고등법원 -----

소속 보통검찰부 -----
--.

② -----
고등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
----- 고등검찰부
의 장 -----
-----.

제124조의2(재정신청에 대한 결정과 이유의 기재) -- 제304조제2항제2호 -----

-----.

제125조의2(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범위) -----

-----.

1. ~ 2. (현행과 같음)
 3. -----
- 고등법원 -----

제125조의4(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범위) ① 법 제306조의3제2항과 관련한 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 2. (생략)
3. 기타 재정신청 사건의 절차에서 피의자가 지출한 비용으로 군사법원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② 제1항 제2호의 비용을 계산함에 있어 선임료를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고액의 선임료를 상한으로 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변호사 선임료는 사안의 성격·난이도, 조사에 소요된 기간 그 밖에 변호인의 변론활동에 소요된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정한다.

제125조의5(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절차) ① 피의자가 법 제306조의3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

제125조의4(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범위) ① -----

1. ~ 2. (현행과 같음)

3. -----

고등법원-----

② 제1항제2호-----

③ 제1항제2호-----

제125조의5(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절차) ① -----

재한 서면을 재정신청사건의 관할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③ 군사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면의 부분을 재정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재정신청인은 위 서면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낼 수 있다.

④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비용액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재정신청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⑤ ~ ⑦ (생략)

제126조의2(공소제기 후 군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복사 신청) 법 제309조의3 제1항의 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126조의3(영상녹화물과 열람·복사) 법 제260조·법 제236조의2에 따라 작성된 영상녹화물에

----- 고등법원-----.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고등법원-----

- 고등법원-----.

④ 고등법원-----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26조의2(공소제기 후 군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복사 신청) -- 제309조의3제1항-----

1. ~ 3. (현행과 같음)

제126조의3(영상녹화물과 열람·복사) ----- 영상녹화물

대한 법 제309조의3의 열람·복사는 원본과 함께 작성된 부분에 의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26조의4(군사법원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 ① 법 제309조의4 제1항의 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 2. (생략)
- ② ~ ③ (생략)
- ④ 제1항, 제2항 제1호·제3호의 규정은 법 제309조의11 제3항에 따른 군검사의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군사법원은 군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즉시 신청서 부분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6조의5(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복사) ① (생략)

② 상대방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서류 등의 열람 또는 복사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군사법원은 법 제309조의4 제2항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에 대한 -----

-----.

제126조의4(군사법원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 ① -- 제309조의4 제1항-----
-----.

- 1. ~ 2. (현행과 같음)
- ② ~ ③ (현행과 같음)
- ④ --- 제2항제1호·제3호-----
----- 제309조의11제3항-----

-----.

제126조의5(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복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309조의4제2항-----

다.

③ (생략)

제126조의9(기일의 공판준비) ①
(생략)

② 재판장은 기한을 정하여 법
제309조의6 제2항에 규정된 서
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제127조의2(일괄 기일 지정과 당
사자의 의견 청취) 재판장은 법
제310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경우에는 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

제129조(피고인의 대리인의 대리
권) 피고인이 법 제32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기일에 대리
인을 출석하게 할 때에는 그 대
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
을 증명하는 서면을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9조의2(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① 법 제326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과 동석할 수 있는

-----.

③ (현행과 같음)

제126조의9(기일의 공판준비)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309조의6제2항-----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27조의2(일괄 기일 지정과 당
사자의 의견 청취) -----
제310조의2제3항-----

-----.

제129조(피고인의 대리인의 대리
권) ----- 제325조-----

-----.

제129조의2(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① -- 제326조의2제1항--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그 밖에 피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26조의2 제1항에 따른 동석신청에는 동석하고자 하는 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동석이 필요한 사유 등을 밝혀야 한다.

③ (생략)

제129조의3(불출석의 허가 및 취소) ① 법 제325조 제3호에 규정한 불출석 허가신청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 하거나 공판기일 외에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131조(피해자의 진술권) ① 법 제3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131조의2(피해자등의 의견진술)

①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

② -- 제326조의2제1항-----

③ (현행과 같음)

제129조의3(불출석의 허가 및 취소) ① -- 제325조제3호-----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31조(피해자등의 진술권) ① - 제338조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등(이하 이 조부터 제131조의4까지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진술에 관한 신청-----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31조의2(피해자등의 의견진술)

① -----

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법 제338조 제1항에 정한 피해자등 (이하 이 조 및 제131조의3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등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법 제338조제2항에 정한 사항으로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 ⑦ (생략)

제133조의2(보관서류에 대한 송부 요구) ① 법 제3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관서류의 송부요구신청은 법원,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군사법원, 군검찰부, 기타의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이하 “법원 등”이라고 한다)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의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134조의2(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 ① ~ ④ (생략)

<신 설>

----- 피
해자등-----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33조의2(보관서류에 대한 송부 요구) ① -----

군사법원, 군검찰단, 법원,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4조의2(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의 영상녹화물의 재생 화면에는 녹화 당시의 날짜와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어야 한

⑤ (생 략)

제134조의3(제3자의 진술과 영상 녹화물) ① ~ ② (생 략)

③ 제134조의2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 제5호, 제6호, 제4항, 제5항은 군검사가 피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34조의5(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 녹화물의 조사) ① (생 략)

② 제134조의2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134조의4는 군검사가 법 제372조제2항에 의하여 영상 녹화물의 재생을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34조의6(증거서류에 대한 조사 방법) ① 법 제347조 제4항에 따른 증거서류 내용의 고지는 그 요지를 고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347조 제1항·제2항·제5항의 낭독에 갈음하여 그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36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시기) 이의신청에 대한 법 제350

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34조의3(제3자의 진술과 영상 녹화물)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34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제5호·제6호, 제4항 및 제5항-----

-----.

제134조의5(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 녹화물의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34조의2제3항-----

-----.

제134조의6(증거서류에 대한 조사 방법) ① -- 제347조제4항-----

-----.

② -----
----- 제347조제1항-----

-----.

제136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시기) ----- 제350

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결정은
이의신청이 있는 후 즉시 하여야
한다.

제139조(석명권등) ① (생략)

② 재판관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41조(공판절차의 갱신절차) ①
(생략)

② 재판장은 제1항제4호 및 제5
호의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함에 있어서 균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관
하여 법 제347조, 법 제348조 및
법 제348조의2에 규정된 방법에
갈음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있다.

제144조의2(보호관찰의 취지등의

고지, 보호처분의 기간) ① 재판
장은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 피고
인에게 형법 제59조의2, 형법 제
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
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감(이하
“보호관찰 등”이라고 한다)을 명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필요

조제3항의 규정-----

--.

제139조(석명권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합의부원-----

-----.

③ (현행과 같음)

제141조(공판절차의 갱신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347조, -----

-----.

<삭 제>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원은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명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이행하여야 할 총 사회봉사시간 또는 수감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봉사 또는 수감할 강의의 종류나 방법 및 그 시설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③ 형법 제62조의2 제2항의 사회봉사명령은 500시간, 수감명령은 200시간을 각 초과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관이 그 명령을 집행함에는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④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의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감명령은 둘 이상 병과할 수 있다.

⑤ 사회봉사·수감명령이 보호관찰과 병과하여 부과된 때에는 보호관찰 기간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144조의3(보호관찰의 판결 등의 <삭 제>

통지) ①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사건이 확정된 군사법원 서기는 3일 이내에 판결문 등본을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군사법원의 의견 기타 보호관찰의 자료가 될 만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

제144조의4(보호관찰 등의 성적보 <삭 제>

고)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판결을 선고한 군사법원은 보호관찰 등의 기간 중 보호관찰소장에게 보호관찰 등을 받고 있는 자의 성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45조(관할관의 확인조치) ① <삭 제>

법 제379조제1항에 따른 판결의 확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판결확인서로 한다.

② 관할관은 제1항의 판결확인서에 형을 감경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다만, 전시,

사변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379조제2항에 따라 선
고된 판결대로 확인한 것으로 보
게 된 경우 군사법원은 별지 제3
호 서식에 따른 관할관 확인기간
도과서를 작성하여 소송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46조의3(청구서부분의 제출과
송달) ① 형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유예취소청구
를 한 때에는 군검사는 청구와
동시에 청구서의 부분을 군사법
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원은 제1항의 부분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집행유예
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
야 한다.

제147조(출석명령) 형의 집행유예
취소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이 법
제3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묻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
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제147조의2(준용규정) 제146조 내

제146조의3(청구서부분의 제출과
송달) ① --- 제64조제2항-----

----- 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

② 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
----- 지체 없이

-----.

제147조(출석명령) -----
----- 군사법원 또는 고
등법원-----

-----.

제147조의2(준용규정) -----

지 제147조의 규정은 형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49조(재소자의 상소장등의 처리) ①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법 제4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장을 제출 받은 때에는 그 제출받은 연월일을 상소장에 부기하여 즉시 이를 원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50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①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는 그 포기 또는 취하당시 소송기록이 있었던 군사법원에 절차속행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군사법원은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고 절차를 속행하여야 하며,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

제61

조제2항

제149조(재소자의 상소장등의 처리) ① -----

원심법원(상고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② (현행과 같음)

제150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① -----

- 취하 당시 -----
원심군사법원 또는 상소법원---

② ----- 원심군사법원 또는 상소법원-----

는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신설>

제152조의2(항소이유 및 답변의
진술) ① 항소인은 그 항고이유
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152조의3(쟁점의 정리) 군사법
원은 항소이유와 답변에 터잡아
해당 사건의 사실상·법률상 쟁
점을 정리하여 밝히고 그 증명되
어야 하는 사실을 명확히 하여야

-----.

③ (현행과 같음)

제151조의2(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소송기록접수통지) ① 기록의 송
부를 받은 고등법원은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
호인을 선정 한 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
다.

②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
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
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52조의2(항소이유 및 답변의
진술) ① ----- 항소이유-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52조의3(쟁점의 정리) 고등법
원-----

한다.

제152조의4(항소심과 증거조사)

① (생략)

② 고등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153조(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

정된 경우 소송기록등의 송부)

법 제433조, 법 제434조 또는 법

제436조의 규정에 의한 환송 또

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1. 고등군사법원은 판결확정일로부터 7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환송 또는 이송받을 군사법원에 송부하고, 고등검찰부 군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송부를 받은 군사법원은 지체없이 그 군사법원에 대응한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생략)

제155조(준용규정) 제2장중 공판

--.

제152조의4(항소심과 증거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고등법원-----

-----.

1. ~ 3. (현행과 같음)

제153조(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

정된 경우 소송기록등의 송부) -

--- 각 호-----
-----.

1. 고등법원-----
7일 이내-----

-----.

2. -----
-- 지체 없이 -----

-----.

3. (현행과 같음)

제155조(준용규정) 제2편 제2장

에 관한 규정은 고등군사법원의
공판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신 설>

제157조(피고인의 불출석등) ①
(생략)

②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대
법원에서 파기환송의 판결이 선
고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선
고일로부터 14일이내에 피고인
에게 그 판결서등본을 송부하여
야 한다.

제158조(대법관전원합의체사건에
관하여 부에서 할 수 있는 재판)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본안재판
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구속, 구
속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 보
석, 보석의 취소, 구속의 집행정
지, 구속의 집행정지의 취소를
함에는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
성된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제161조(항고군사법원의 결정등본

중 ----- 고등법원-----
-----.

제155조의2(신분상실과 재판권)

항소심 진행 중에 피고인이 법
제2조제1항의 신분을 상실한 경
우 고등법원이 계속하여 해당 사
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제157조(피고인의 불출석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4일 이내-----

-----.

제158조(대법관전원합의체사건에
관하여 부에서 할 수 있는 재판)

----- 3인 이상-----
-----.

제161조(항고법원의 결정등본의

의 송부) 항고군사법원이 법 제462조 또는 법 제463조에 규정된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 등본을 원심군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164조(재심개시 결정) 관할군사법원이 법 제4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원심군사법원과 재심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에 그 결정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65조(청구의 경합과 공판절차의 정지) ① 항소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고등군사법

송부) 항고법원-----

-----.

제162조의2(신분상실과 재심관할)
군사법원이 한 원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이 법 제2조제1항의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그 원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같은 심급의 법원이 관할한다.

제163조의2(준용규정) 제149조의 규정은 재심의 청구와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제164조(재심개시 결정) 관할군사법원 또는 상소법원-----

----- 재심법원----- 군검찰부 또는 대검찰청-----
-----.

제165조(청구의 경합과 공판절차의 정지) ① -----

----- 고등법원

원은 결정으로 제1심 군사법원의 소송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소송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 상고기각의 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하여 각각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대법원은 결정으로 제1심 또는 제2심의 군사법원의 소송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소송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제165조의3(약식명령의 시기) 약식명령은 그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4일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165조의4(보통의 심판) ① (생략)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군검사는 즉시 피고인수에 상응한 공소장부분을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65조의6(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 제501조의2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는 다음 각호의 1에

-----제1심 군사법원-----

-----.

② -----

----- 제1심의 군사법원 또는 제2심의 고등법원-----

-----.

제165조의3(약식명령의 시기) ---

-- 14일 이내-----.

제165조의4(보통의 심판) ① (현행과 같음)

② -----
---- 피고인의 수-----

-----.

③ (현행과 같음)

제165조의6(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 제501조의21제1항-----
-----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으로부터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자

2. 도로교통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으로부터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자

3. 경범죄처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범칙자 또는 도로교통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범칙자로서 통고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으로부터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자
제165조의7(불출석심판청구의 방식등) ① 법 제501조의2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출석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즉결심판을 청구할 관할군사경찰부대의 장에게 통고처분에 의하여 납부하였어야 할 범칙금(도로교통법

하나-----
-----.

1. 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2항-----

2. ----- 제164조제1항-----
-----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

3. 경범죄 처벌법 제6조-----

----- 제162조-----

제165조의7(불출석심판청구의 방식등) ① -- 제501조의21제1항-----

----- 관할 군사경찰부대-----

위반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 118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을 말한다)또는 각 범칙행위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정하여진 범칙금의 1.5배액을 예납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불출석심판청구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납액을 예납한 때에는 이를 수령한 군사경찰과의 군사법경찰관이 별지 제1호 서식의 불출석심판청구서의 해당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생략)

5편 보칙

<신설>

<신설>

제163조

경범죄

처벌법

② (현행과 같음)

③

군

사법경찰관

④ (현행과 같음)

제5편 전시·사변 시의 특례

제168조(중요사건의 심판) 법 제53

4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의 보통군사법원이 심판할 수 있는 그 밖의 중요사건이라 함은 법 제36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중요사건을 말한다.

제169조(심판관의 임명) 법 제534

<신 설>

조의4에 따른 관할관은 전시 군사법원이 재판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 제534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심판관을 미리 임명하여야 한다.

<신 설>

제170조(전시 고등군사법원의 구성) 법 제534조의12제3항 단서에 의하여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군판사 3인 외에 심판관 2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 설>

제171조(재판관의 지정) ① 관할관은 전시 군사법원에 계속되는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 제534조의11에 따라 재판관을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고등군사법원 관할관이 재판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주심을 행하도록 군판사의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172조(재판관의 계급) ① 피고인이 장교 또는 동등이상의 군무원, 군적을 가진 사관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군소속기관의 학생, 생도와 사관후보생, 민간인, 외

<신 설>

<신 설>

제5편 보칙

국인일 경우에는 그 전시 군사법원의 재판장은 영관급이상의 장교이어야 한다.

② 고등군사법원의 재판관은 영관급이상의 장교이어야 한다.

③ 법 제534조의14의 규정은 소집중에 있는 예비역군인에 대하여도 그 계급에 따라 준용한다.

제173조(관할관의 확인조치) ① 법 제534조의7제1항에 따른 판결의 확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판결확인서로 한다.

② 법 제534조의7제2항에 따라 선고된 판결대로 확인한 것으로 보게 된 경우 전시 군사법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관할관 확인기간 도과서를 작성하여 소송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74조(준용규정) 이 편에서는 이 규칙 중 “고등법원”은 “고등군사법원”으로, “군사법원”은 “보통군사법원”으로, “상소법원”은 “고등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으로, “항고법원”은 “항고군사법원”으로 간주한다.

제6편 보칙

제168조(신청 기타 진술의 방식)

①~③ (생략)

제169조(재소자의 신청 기타 진술)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대법원, 군사법원 또는 군판사에 대한 신청 기타 진술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그 편의를 도모하여야 하고, 특히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그 서명을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401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9조의2(기일 외 주장 금지)

①~②(생략)

제170조(공판정의 좌석등 배치) 공판정에서의 재판관·서기·군검사·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과 증언대의 위치에 관하여는 공판정에서의 좌석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75조(신청 기타 진술의 방식)

①~③ (현행과 같음)

제176조(재소자의 신청 기타 진술) -----

----- 상소법원,

-----.

제176조의2(기일 외 주장 금지)

①~②(현행과 같음)

제177조(공판정의 좌석등 배치) -

-----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1930